

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81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4. 10. 8.

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공동주택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을 확대·완화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,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리하여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보조금 재신청 기간 완화(안 제6조제2항)

- 보조금 신청 후 7년 이내→ 5년 이내

나. 보조금 비율 확대 : 50~70% → 50~80% (안 제6조제3항 별표)

다.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구 정비

3. 근거법규 : 「주택법」 제43조제9항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사항 : 해당없음

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
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 : 원안동의

라. 입법예고 : 2014. 7. 28. ~ 2014. 8. 18.(의견없음)

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명 “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”를 “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」로 한다.

제1조 중 “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43조제9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울산광역시중구”를 “울산광역시 중구”로, “의하여”를 각각 “따라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7년”을 “5년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2항에 따라”로 “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3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3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, “아니 된다.”를 “안 된다.”로 한다.

제10조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10인”을 “10명”으로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,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“2인”을 “2명”으로,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, 같은 조 제5항 중 “「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”를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”로,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로, 같은 조 제6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, 주택허가업무담당주사가”를 “주택허가업무담당이”로 한다.

제12조 중 「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울산광역시중구 재무회계 처리 규칙」 “을 ” 「울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」으로,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별지 1

[별표]

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(제6조 관련)

세 대 수	상한금액	지급비율	비고
100세대 미만	25,000천 원	80%	
100세대 이상 ~ 300세대 미만	30,000천 원	70%	
300세대 이상 ~ 500세대 미만	35,000천 원	70%	
500세대 이상 ~ 1,000세대 미만	40,000천 원	60%	
1,000세대 이상	50,000천 원	50%	

※ 지급비율은 총 사업비 중 보조금 비율을 말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	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주택법」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보조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~~제43조~~ 제9항에 따라 ~~제43조~~ _____ _____ _____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 _____ 뜻은 _____.
1. ~ 2. (생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 (이하 “구”라 한다)관할 지역 안에 법과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에 의하여 건립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중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에 적용한다. 다만, 영리 목적의 임대주택(사원임대 포함)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립·고시된 지역안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.	제4조(적용범위) _____ 울산광역시 중구 _____ _____ 따라 _____ _____ _____ _____ 따라 _____ _____ _____.
제6조(보조금 비율 등) ①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.	제6조(보조금 비율 등) ① _____ 예산의 범위에서 _____.
②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7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.	② _____ 5년 _____ _____ _____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7조(보조방법 및 신청) ① (생략)	제7조(보조방법 및 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 -

현행	개정안
6. <u>기타</u>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</u>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, 입주자대표 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③ 구청장은 <u>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</u>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보조 여부와 보조 규모를 결정하고,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 ④ <u>제3항의 규정에 의한</u> 현장조사는 관련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,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. 제8조(보조금 목적의 사용금지)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<u>의하여</u>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,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<u>아니 된다.</u> ② (생략) 1. ~ 5. (생략) 제10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(생략) 1. ~ 3. (생략) 4. <u>기타</u>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<u>10인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6. <u>그 밖에</u>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----- <u>제1항에 따라</u> ----- -----. ③ ----- <u>제2항에 따라</u> ----- ----- <u>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</u> ----- -----. ④ <u>제3항에 따른</u> ----- -----. 제8조(보조금 목적의 사용금지) ① -----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<u>안 된다.</u> ② (현행과 같음) 1. ~ 5. (현행과 같음) 제10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(현행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그 밖에</u>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10명</u> -----.

현행	개정안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1. 구의회 의원 : 2인 2. ~ 3. (생략) 4. 구청장이 안전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~ ④ (생략)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「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, 간사는 주택허가업무 담당주사가 되고, 서기는 주택허가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. ⑦ (생략) 제12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 공동주택의 보조에 관한 사항은 「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울산광역시중구 재무회계 규칙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	② _____ _____ _____ 사람 _____ _____. 1. _____ 2명 2. ~ 3. (현행과 같음) 4. _____ _____ 사람 ③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_____ _____ 「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_____ 예산의 범위에서 _____ _____. ⑥ _____ _____ 1명 _____ 주택허가업무 담당이 _____ _____. ⑦ (현행과 같음) 제12조(준용) _____ _____ 「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울산광역시중구 재무회계 규칙」 _____ 따른다.

(제171회-본회의 제2차부록)

현행				개정안			
[별표]				[별표]			
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(제6조 관련)				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(제6조 관련)			
세대수	상한금액	지급비율	비고	세대수	상한금액	지급비율	비고
100세대 미만	25,000천원	70%		100세대 미만	25,000천원	80%	
100세대 이상 ~	30,000천원	50%		100세대 이상 ~	30,000천원	70%	
~				300세대 미만			
500세대 미만	35,000천원	50%		300세대 이상 ~	35,000천원	70%	
500세대 이상				500세대 미만			
				500세대 이상 ~	40,000천원	60%	
				1,000세대 미만			
				1,000세대 이상	50,000천원	50%	
※ 지급비율은 총 사업비 중 보조금 비율을 말한다				※ 지급비율은 총 사업비 중 보조금 비율을 말한다.			

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1081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심사경과

- 제출연월일 : 2014. 10. 08.(수)
-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위원회회부 : 2014. 10. 10.(금)
- 위원회심사 : 2014. 10. 17.(금)

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주택법」 제43조제9항에 의거 공동주택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을 확대·완화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,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보조금 재신청 기간 완화(안 제6조제2항)
 - 보조금 신청 후 7년 이내 → 5년 이내
- 보조금 비율 확대(안 제6조제3항 별표)
 - 50~70% → 50~80%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구를 정비(안 제9조)

- ~에 의한(~에 따른), ~에 의하여(~에 따라),
기타(그 밖에), 자(사람), 의한(따른), 의하여(따라),
1인(1명), 용어의 정의는(용어의 뜻은)

4. 근거법령

- 「주택법」 제43조제9항

5. 검토보고(전문위원 김석기)

- 「주택법」 제43조제9항에 의거 공동주택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을 확대·완화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,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
-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주택법」 제43조 제8항의 <u>규정에 의하여</u> 공동주택의 관리주 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보조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<u>정의</u>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2. (생략) 제4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 (이하 “구”라 한다)관할 지역 안에 법과 「도 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에 <u>의하여</u> 건립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중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에 적용한다. 다만, 영리 목적 의 임대주택(사원임대 포함) 및 「도시 및 주 거환경 정비법」에 <u>의하여</u>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립·고시된 지역안의 공동주 택은 제외한다. 제6조(보조금 비율 등) ① 보조금은 <u>예산의</u> <u>범위 안에서</u> 지원한다. ②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<u>7년</u>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. ③ (생략) 제7조(보조방법 및 신청) ① (생략) 1. ~ 5. (생략)	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조(목적) -----제43조 제9항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. 제2조(정의) ----- <u>뜻은</u> -----. 1. ~ 2. (현행과 같음) 제4조(적용범위) ----- 울산광역시 중구 -----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. 제6조(보조금 비율 등) ① ----- <u>예산의</u> <u>범위에서</u> -----. ② ----- <u>5년</u> -----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 제7조(보조방법 및 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5. (현행과 같음) -

현행	개정안
6. <u>기타</u>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</u>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,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③ 구청장은 <u>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</u>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보조 여부와 보조 규모를 결정하고,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 ④ <u>제3항의 규정에 의한</u> 현장조사는 관련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,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. 제8조(보조금 목적의 사용금지)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<u>의하여</u>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,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<u>아니 된다.</u> ② (생략) 1. ~ 5. (생략) 제10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(생략) 1. ~ 3. (생략) 4. <u>기타</u>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<u>10인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6. <u>그 밖에</u>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----- <u>제1항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. ③ ----- <u>제2항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<u>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</u> ----- ----- -----. ④ <u>제3항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. 제8조(보조금 목적의 사용금지) ① ----- -----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<u>안 된다.</u> ② (현행과 같음) 1. ~ 5. (현행과 같음) 제10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(현행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그 밖에</u>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10명</u> -----.

현행	개정안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1. 구의회 의원 : 2인 2. ~ 3. (생략) 4. 구청장이 안전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~ ④ (생략)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「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, 간사는 주택허가업무 담당주사가 되고, 서기는 주택허가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. ⑦ (생략) 제12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 공동주택의 보조에 관한 사항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」이 정하는 바에 <u>의한다.</u>	② ----- ----- ----- 사람 ----- -----. 1. ----- 2명 2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사람 ③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「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----- 예산의 범위에서 ----- -----. ⑥ ----- ----- 1명 ----- 주택허가업무 담당이 ----- -----. ⑦ (현행과 같음) 제12조(준용) ----- ----- 「울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」 ----- <u>따른다.</u>

(제171회-본회의 제2차부록)

현행				개정안			
[별표]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(제6조 관련)				[별표]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(제6조 관련)			
세대수	상한금액	지급비율	비고	세대수	상한금액	지급비율	비고
100세대 미만	25,000천원	70%		100세대 미만	25,000천원	80%	
100세대 이상 ~ 500세대 미만	30,000천원	50%		100세대 이상 ~ 300세대 미만	30,000천원	70%	
500세대 이상	35,000천원	50%		300세대 이상 ~ 500세대 미만	35,000천원	70%	
				500세대 이상 ~ 1,000세대 미만	40,000천원	60%	
				1,000세대 이상	50,000천원	50%	
※ 지급비율은 총 사업비 중 보조금 비율을 말한다				※ 지급비율은 총 사업비 중 보조금 비율을 말한다			

〈 관 계 법 령 〉

□ 주택법

제43조(관리주체 등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(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,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,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12.24.>

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,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(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)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,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. 다만,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.

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 및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 <개정 2013.12.24.>

⑥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

며,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제5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9.16.>

1.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
2.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
3. 제5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

⑦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. <신설 2013.12.24.>

1.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(이하 "전자입찰방식"이라 한다)할 것. 다만,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2.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

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12.24.>

1. 제1항에 따른 통지·요구의 방법 및 절차
2.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·운영 및 의결사항
3. 관리주체의 업무
4. 관리방법의 변경
5. 공동주택관리기구(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)의 구성·기능·운영

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2.24.>

⑩ 입주자대표회의와 「임대주택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임대주택법」 제29조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<신설 2013.12.24.>

- ⑪ 제10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, 공동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3.12.24.>

[전문개정 2009.2.3.]

[시행일 : 2014.6.25.] 제43조제1항, 제43조제5항, 제43조제7항, 제43조제8항, 제43조제9항, 제43조제10항, 제43조제11항

[시행일 : 2015.1.1.] 제43조제7항제1호